자율 균형 미래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www.goe.go.kr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CONTENTS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 1

Ⅰ. 산업안전보건법 ····· 3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5

Ⅰ.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체제 ····· 7

Ⅱ.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4

제3장 산업재해 대응체계 ····· 17

Ⅰ.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재해 대응절차 ····· 19

Ⅱ.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33

Ⅲ.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 35

Ⅳ.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 39

제4장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 45

Ⅰ.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 47

제5장 안전보건교육 ····· 51

Ⅰ. 안전보건교육 ····· 53

제6장 물질안전보건자료 ····· 59

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61

제7장 위험성평가 ····· 75

Ⅰ. 위험성평가 ····· 77

제8장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81
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83

제9장 작업환경측정 ····· 87
Ⅰ. 작업환경측정 ····· 89

제10장 안전보건표지 ····· 93
Ⅰ. 안전·보건표지 ····· 95

제11장 보호구 ····· 99
Ⅰ. 보호구 ····· 101

제12장 근로자 건강관리 ····· 105
Ⅰ. 근로자 건강진단 ····· 107
Ⅱ. 산업보건의 운영 ····· 110
Ⅲ. 근로자 건강센터 업무협약 ····· 112

부록 ····· 115
Ⅰ. 법령체계도 ····· 117
Ⅱ. 안전보건관리규정 ····· 119
Ⅲ. Q&A ····· 140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Ⅰ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함

1 연혁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제6장 안전과 보건)
- 위험방지 및 안전장치
-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 안전·보건관리자
-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공포

◎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 제76조를 제외하고 안전·보건 관련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

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 **근로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사업주 또는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를 것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Ⅰ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체제

- 현업업무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및 제3장의 적용(2020.1.16.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1 관련 법령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2021년 2분기**

- 각급학교의 관리감독자(업무총괄)는 학교(원)장으로 한다.
- 업무담당(자)은 영양(교)사(급식관련 직종) 및 시설·기타 업무담당(시설·기타직종)으로 하며, 관련법령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통솔 범위에 근거하여 부서별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 각급학교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업무지원” 부서(교무실, 행정실)를 지정한다.

☐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장(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2 적용범위 및 대상

▢ 사업주: 경기도교육감

※ 사립학교 사업주는 학교법인 이사장임

▢ 적용범위: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

[기준일: 2024.3.1.]

구분	계	기관				공립학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이룸학교	단설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관수	2,542	1	25	40	7	166	1,351	581	354	14	3

※ 경기도교육청 산하 2,542개 기관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적용대상: 교육감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29개 직종

교육공무직원(15개 직종)	교원·지방공무원(14개 직종)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각급학교장애인일자리사업(급식보조), 급식배식보조원, 청소원, 구육성회(시설), 시설경비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안내원, 안내원, 당직전담원, 통학차량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	영양교사, 시설관리, 농업, 식품위생, 공업, 조리, 운전, 방송통신, 건축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농림운영

참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참고 2 현업업무종사자 지정 근거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 ·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 · 보수 등의 업무
3. 도로 · 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 · 폐기물의 수거 · 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 · 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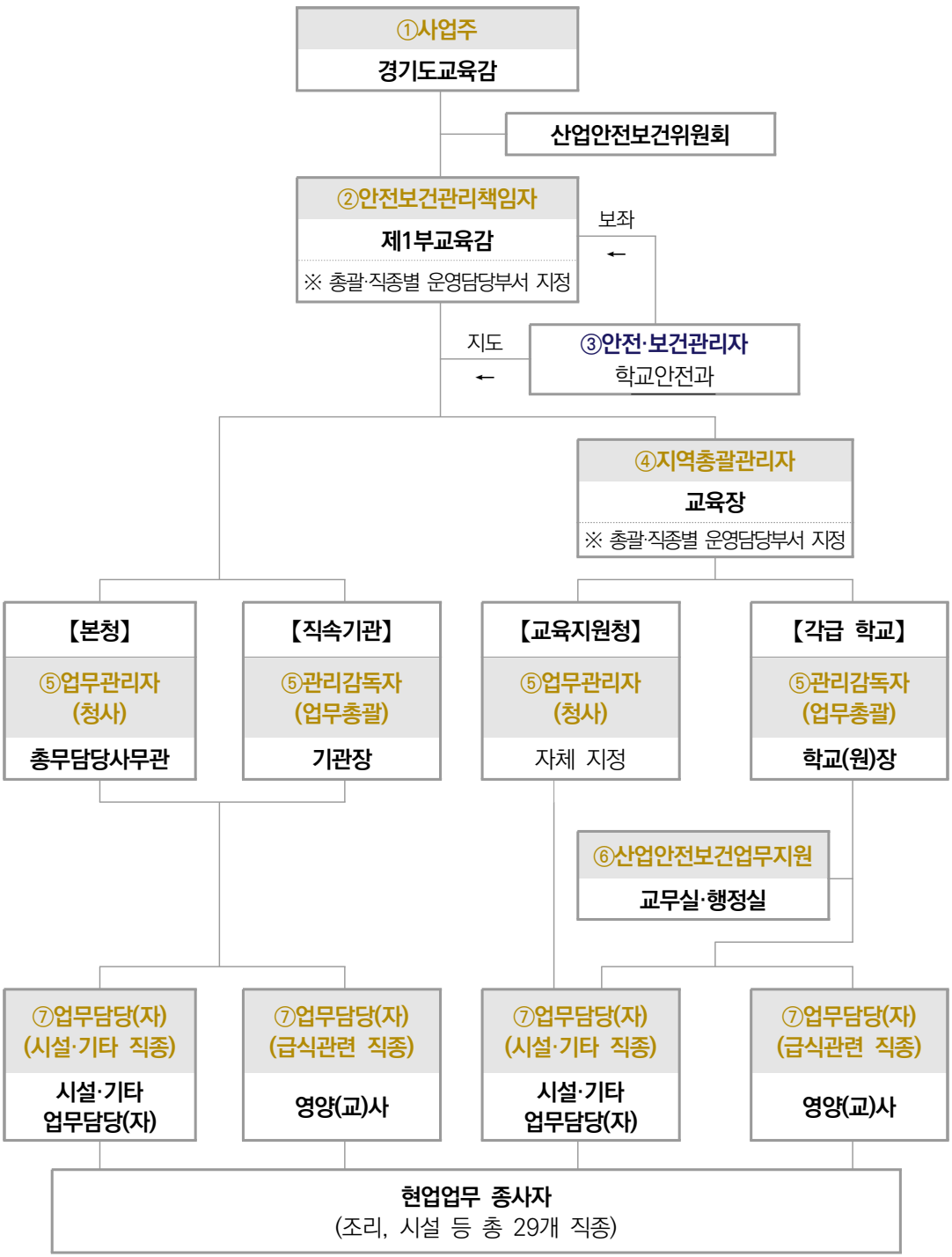
[별표 2]

초등 · 중등 ·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 ·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3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직무

구분		대상	직무
①	**사업주**	▫ **교육감**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제1부교육감** ※ 법 제15조, 조례 제7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업무 수행) ▫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본청 총괄 및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지정
③	**안전·보건 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학교안전과) ※ 법 제17·18조, 조례 제7조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22조의 업무 수행)
④	**지역총괄 관리자**	▫ **교육장**(교육지원청) ※ 조례 제7조	▫ 해당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 관리감독** ▫ 해당 지역 내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총괄 및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지정
⑤	**관리감독자 (업무총괄)**	▫ **기관장**(직속기관) ※ 조례 제7조	▫ 대상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며,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업무 수행)
		▫ **학교(원)장**(각급 학교) ※ 조례 제7조	
	업무관리자 (청사)	▫ **총무담당사무관** (본청) ▫ 자체지정(교육지원청)	
⑥	**산업안전보건 업무지원**	▫ **교무실·행정실**	▫ 각급 학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협조·지원**
⑦	**업무담당(자)**	(급식관련 직종) ▫ **영양(교)사**	▫ **관련법령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통솔 범위에 근거**하여 부서별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시설·기타 직종) ▫ **시설·기타 업무담당(자)**	

☐ **교육(지원)청 총괄 및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p22 [참고1] 참조)**

	산업안전보건 총괄부서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급식직종	당직직종	미화직종	기타직종
본청	학교안전과	학교급식보건과	운영지원과	노사협력과	학교안전과
교육지원청	※ 지역총괄관리자(교육장)가 지정				
	▫ **(산업안전보건총괄부서)** 지역총괄관리자(교육장)를 보좌, 관할지역 산업안전보건 총괄업무(취합·조정 등) 수행 ▫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각급 학교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직종별 부서 지정 후 해당 직종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업무 수행				

4 업무추진 방법

☐ **각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수립 후 조직도를 작성하여 게시**

-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참고하여 각 기관·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작성할 것
- **시설·기타 직종 업무담당(자)**은 각 기관별 관리체계·업무분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정

☐ **인사발령으로 인한 안전보건관리조직 변경 시 즉시 정비 및 안전보건관리 철저**

참고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와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참고 4 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Ⅱ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2 개요

☐ **역할**

- 사업장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 **위원회 구성**

구분	위원 구성	
사용자위원 (10명)	당연직(3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부교육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촉직(7명)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7인 이내 사업장 부서의 장
근로자위원 (10명)	당연직(2명)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직(8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8명 이내 사업장 근로자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위원회 개최 시기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기별 1회 실시(연간 총 4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위원장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며, 1·3분기는 사용자측 대표가 2·4분기는 근로자측 대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 위원회 운영 흐름도

① 안건접수	② 안건별 의견 청취	③ 실무위원회 실시	④ 위원회 개최 알림	⑤ 위원회 개최	⑥ 회의 결과 알림
안건제출 근로자 ≒ 사용자	사업부서 의견청취	위원회 안건 상정 등 검토	위원회 개최 알림	안건 심의·의결*	의결 결과를 전 사업장에 알림

*** 의결정족수: 근로자·사용자 각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의결 대상

- 현업업무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1)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500	500	500
	2)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주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제3장
산업재해 대응체계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3장 산업재해 대응체계

Ⅰ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재해 대응절차

- 기관(학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산업재해 대응절차 수립을 통해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기관별 역할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업재해관리를 추진하기 위함임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2 개요

☐ **산업재해 정의**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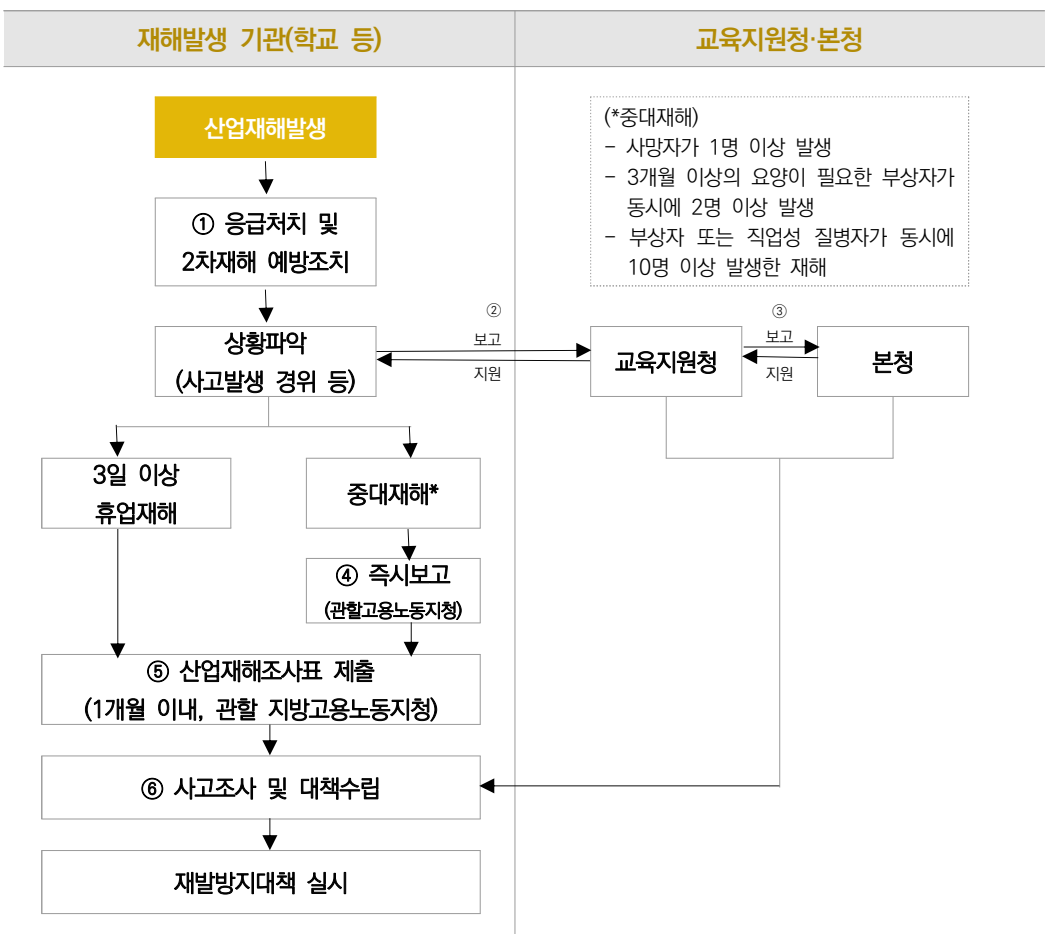
☐ 경기도교육감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교육공무직원(15개 직종)	교원·지방공무원(14개 직종)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각급학교장애인일자리사업(급식보조), 급식배식보조원, 청소원, 구육성회(시설), 시설경비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안내원, 안내원, 당직전담원, 통학차량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	영양교사, 시설관리, 농업, 식품위생, 공업, 조리, 운전, 방송통신, 건축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농림운영

※ 근거: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제2020-62호)

3 대응체계 조직도

☐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 흐름도



※ ②, ③ : 직속기관은 본청으로 보고

▢ 흐름도별 상세 설명

구분		내용	비고
①	응급대응	•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응급처치 시행 • 필요에 따라 119 신고 또는 의료기관 진료 • 응급처치 및 사후대처 관련 학교 내 협조	
	2차 재해 예방조치	• **2차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 조치 시행**	
②	재해발생 기관(학교 등)	•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부서로 보고** * 발생보고서 : 산업재해 발생 시 학교 ⇨ (4일이내) 교육지원청 ⇨ (3일이내) 본청 ※ 다만 재해 정도가 **중하여**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 상황공유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첨부하여 즉시보고** (재해정도는 소속 기관(학교)에서 판단함) ※ 본청, 직속기관은 4일 이내 본청 학교안전과로 보고	(참고1) · (참고2) 서식
③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부서** - 산업재해 발생 내용 접수 및 상황 파악 - 본청 학교안전과에 보고 - 산업재해 발생 학교 지원 ※ 중한 재해의 경우는 교육지원청 내 각 부서 상황 공유	
	(본청)	• 본청 학교안전과 - 산업재해 발생 내용 접수 - 본청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공유(중한 재해의 경우만) - 산업재해 발생 기관(학교) 및 교육지원청 지원	
④	중대재해 보고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 해당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즉시 보고** (전화, 팩스 등) ※ 중대재해의 경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매뉴얼」 참조	(참고3) (참고5)
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고용노동부)-	• **(제출대상)**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 휴업일수는 단순 병가일수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 • **(제출기한·기관) 재해발생일로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승인일 이후 1개월 이내	(참고4) 서식 ※ 3년간 서류 보존
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재해원인, 발생경위 조사 등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시	

참고 1 교육지원청 및 본청 총괄·직종별 운영담당부서(현행화)

(2024. 3. 1. 기준)

본청	산업안전보건 총괄부서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급식	당직	미화	기타
	학교안전과	학교급식보건과	운영지원과	노사협력과	학교안전과

교육지원청	산업안전보건 총괄부서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급식	당직	미화	기타
가평	행정과 대외협력팀	교육과 평생교육건강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관련) 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그 외) 행정과 경영지원팀
고양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평생교육건강과 학교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학교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통학차량)학교행정지원과 학교행정지원팀
광명	행정과 기획행정팀	교육과 급식팀	행정과 기획행정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청사시설, 청사미화, 청사운전)행정과 기획행정팀 (학교 시설관리)행정과 기획행정팀
광주 하남	기획경영과 성과사학팀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성과사학팀	재무관리과 관재팀	(시설관리, 운전, 통학차량운전원-정수배정차량) 기획경영과 성과사학팀 (통학차량운전원-정수배정차량 외, 통학차량보조원)초등교육지원과 통학안전담당
구리 남양주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학교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팀	(청사시설, 청사미화, 운전, 지방공무원)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통학차량운전원, 보조원, 기타) 학교행정지원과 학교행정지원팀
군포 의왕	행정과 기획경영팀	교육과 학교급식지원팀	행정과 기획경영팀	의왕교육지원센터 의왕대외협력팀	(구육성회(시설)) 의왕교육지원센터 의왕대외협력팀 (청사시설미화, 그 외) 행정과 기획경영팀
김포	행정과 경영지원팀	교육과 급식지원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그 외)행정과 경영지원팀
동두천 양주	행정과 경영지원팀	교육과 교육급식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성과팀	(통학차량)교육과 학교폭력제로센터 (그 외)행정과 경영지원팀
부천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재무관리과 교육공무직팀	(통학차량) 기획경영과 유아성과담당, 초등교육지원과 교육지원행정담당 (그 외) 기획영영과 기획경영팀
성남	기획경영과 성과협력팀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학교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통학차량)학교행정지원과 교육복지팀
수원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학교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경영지원팀 (통학차량)학교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시흥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교육공무직)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시설관리)학교시설개선과

교육지원청	산업안전보건 총괄부서	직종별 운영담당부서			
		급식	당직	미화	기타
안산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재무관리과 관재팀	(통학차량)초등교육지원과 초등인사·유아교육팀 (시설관련)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안성	행정과 대외협력팀	교육과 학교급식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관련)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청사시설관리)행정과 경영지원팀 (그 외)행정과 대외협력팀
안양 과천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통학차량관련)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 (지방공무원)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교육공무직원)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학교시설개선과) 학교시설개선과 시설행정개선팀
양평	행정과 경영대외팀	교육과 학교급식팀	행정과 경영대외팀	행정과 성과팀	(통학차량운전원) - 정수배정차량: 행정과 경영대외팀 - 정수미배정차량: 교육과 학교행정팀 (통학차량운전보조원) - 교육과 학교행정팀 (그 외) - 지방공무원: 행정과 경영대외팀 - 교육공무직: 행정과 성과팀
여주	행정과 경영지원팀	교육과 학교급식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 교육과 학생지원팀 (시설) 행정과 시설관리팀 (운전) 행정과 경영지원팀
연천	행정과 대외협력팀	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교육과 생활인성안전팀 (시설)행정과 시설관리1팀 (운전)행정과 경영지원팀
용인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평생교육건강과 학교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학교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팀	(통학차량)학교행정지원과 교육복지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교육공무직원)학교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팀
의정부	행정과 대외협력팀	교육과 학생급식지원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시설직종)행정과 경영지원팀 (차량직종)교육과 중등교육팀
이천	행정과 경영지원팀	교육과 학교급식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교육과 학생지원팀 (그 외)행정과 경영지원팀
파주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통학차량운전원)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통학차량보조원)초등교육지원과 초등교육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평택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	(운전)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시설관리 등)학교시설개선과 학교시설개선3팀
포천	행정과 경영지원팀	교육과 학교급식보건팀	행정과 경영지원팀	행정과 대외협력팀	(통학차량)교육과 미래교육팀 (학교시설개선팀)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청사시설관리)행정과 경영지원팀
화성 오산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학교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팀	(통학차량) 화성교육지원센터 학교안전팀, 학교행정지원과 학교행정지원관리팀 (지방공무원)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

참고 2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현업 □현업 외)

사업장 정보	기관명 (학교명)		산재관리번호		
재해 개요	발생일		발생 장소		
	연령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직종		휴업일수		
	발생형태				
재해내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도교육청 지원 여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1항

①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③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작성 요령〉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현업 □현업 외)

사업장 정보	기관명 (학교명)		❶산재관리번호		
재해 개요	❷발생일		발생 장소		
	연령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❸직종		❹휴업일수		
	❺발생형태				
❻재해내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❼도교육청 지원 여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❶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조회〉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용에서 조회

❷ **(업무상 사고)** 사고 발생일 작성

(업무상 질병) 요양 급여 승인일 작성

❸ **(현업업무종사자)** 경기도교육감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29개 직종의 직종명 작성

교육공무직원 (15개 직종)	교원 및 지방공무원 (14개 직종)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각급학교장애인일자리사업(급식보조), 급식배식보조, 청소원, 구육성회(시설), 시설경비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당직전담원, 안내원, 시설안내원, 통학차량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	영양교사, 시설관리, 농업, 식품위생, 공업, 조리, 운전, 방송통신, 건축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농림운영

(현업업무종사자 외)

- 교원: '교장, 교감, 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으로 기재
- 지방공무원: 직급 기재(예. 주무관(x), 교육행정 6급(o), 전산 7급(o))
- 현업 외 교육공무직원: 직종명 기재(예. 행정실무사 등)

❹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한 휴업 일수이며,

(업무상 사고) 진단서를 기초로 작성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를 기초로 작성

❺ '발생형태'란 재해 및 질병이 발생된 형태 또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기인물과 관련된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상 사고) 화상, 넘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부딪힘, 절단·베임·찔림, 떨어짐, 깔림, 무리한동작, 기타 중 택1하여 작성

분류기준	분류내용
• 화상	화재 또는 뜨거운 물 등에 접촉한 경우
•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 절단·베임·찔림	칼 등 날카로운 물체 또는 톱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절단되거나 베어짐
•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 깔림	물체의 쓰러짐
• 무리한 동작***	일시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거나 평소와 다른 부자연스러운 자세 또는 동작의 반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 기타	재해의 발생 경위가 확인이 되나, 상기의 분류항목에 없는 경우

(업무상 질병) 근골격계질환****, 기타 중 택1하여 작성

(출퇴근 재해) 출퇴근재해로 작성

※ 참고: 자주 혼동되는 분류 기준

* **물체에 맞음**	('부딪힘'과 구별)	재해자는 이동이 없는데 **물체가 이동하여 맞음**
** **부딪힘**	('물체에 맞음'과 구별)	물체는 이동이 없는데 **재해자가 움직여 부딪힘**
*** **무리한 동작**	('근골격계질환'과 구별)	**일시적 동작**으로 상해를 입음
**** **근골격계질환**	('무리한 동작'과 구별)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병**

❻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직종), 무엇을, 왜, 어떻게)에 근거하여 상세히 작성하며, 반드시 재해 정도를 표기(예. 손목 골절, 2도 화상, 인대 파열, 2주 진단 등)

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유선 지원 혹은 안전 점검 등의 현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작성 예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현업 □현업 외)

사업장 정보	기관명 (학교명)	*OO고등학교*	산재관리번호		*90700224721*
재해 개요	발생일	*2024.1.19.*	발생 장소		*계단*
	연령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직종	*시설미화원*	휴업일수		*30일*
	발생형태	*넘어짐*			
재해내용		*시설미화원이 12시30분쯤 본관 2층 계단을 내려오며 청소하던 중 넘어지며 손을 바닥에 짚다가 손목 골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		O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2024.1.23.*
도교육청 지원 여부		O	담당자	성명	김○○
				전화번호	031-000-0000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현업 ■현업 외)

사업장 정보	기관명 (학교명)	*OO고등학교*	산재관리번호		*90700224721*
재해 개요	발생일	*2024.1.2.*	발생 장소		*체육관*
	연령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직종	*교사*	휴업일수		*3일이상*
	발생형태	*무리한 동작*			
재해내용		*체육교사가 오후 4시경 체육관에서 앞구르기 시범을 보이다가 목 근육이 경직되어 2주 진단 받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		O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2024.1.17.*
도교육청 지원 여부		X	담당자	성명	이○○
				전화번호	031-000-0000

참고 3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시행규칙 제3조)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참고 4 산업재해조사표(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1234567890 1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1	
	②사업장명	00학교		③근로자 수	(산재보험가입인원) 명	
	④업종	교육서비스업		소재지	(우편번호) 00시 00구 00동 00길120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성별	[ ]남 [√]여
	주소	경기도 00시 00대로 00길 00			휴대전화	010-0000-0000
	국적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조리원(※나이스직종명)
	입사일	20△△년 △ 월 △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염좌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허리	⑰ 휴업예상일수	휴업 [14]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20△△]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경기도 00시 00구 00로 소재의 00학교 급식소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000)가 배식 후 잔반 등의 처리를 담당
		재해발생 당시 상황	배식용 대차에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 중에 있었음
	⑲재해발생원인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몸의 무게중심을 잃어 미끄러지면서 넘어짐 (※서식 뒷면 작성방법 참조)
Ⅳ. ⑳재발 방지 계획	- 잔반처리 중 음식물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 수시로 바닥 청소하도록 교육 - 음식물 처리 작업은 정해진 작업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 장소 지정		

※ ⑳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0 0 0
작성자 전화번호 031 - 000 - 0000
작성일 20△△년 △△월 △△일
사업주 00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 □ □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⑯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⑰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⑱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ㅅ

⑲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참고 5 지방고용노동지청(산재예방지도과) 관할구역 및 연락처

순번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대표번호
1	부천지청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95 금영프라자 2차 5층 501호	부천, 김포	전화) 032-714-8788 팩스) 0508-8230-0167
2	의정부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의정부,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전화) 031-850-7636 팩스) 0508-8230-0196
3	고양지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화정동 964)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4층	고양, 파주	전화) 031-931-2875 팩스) 0508-8230-0221
4	경기지청 (前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34, 3층	수원, 화성, 용인	전화) 031-259-0252 팩스) 0508-8230-0253
5	성남지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광주, 이천, 하남, 여주, 양평	전화) 031-740-6721 팩스) 0508-8230-0283
6	안양지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9-35)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전화) 031-463-7351~7356 팩스) 0508-8230-0310
7	안산지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안산, 시흥	전화) 031-412-1974 팩스) 0508-8230-0336
8	평택지청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3층 평택고용노동지청 (이충동, 장당프라자)	평택, 오산, 안성	전화) 031-646-1184~1189 팩스) 031-668-5019
9	강원지청 (前춘천)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64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가평	전화) 033-269-3581~7 팩스) 0508-8230-0371

Ⅱ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함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2 개요

☐ **제출 대상**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관(학교)

☐ **제출 시기 :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예 : 질병 등) : 산업재해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추진 절차**

산업재해 발생	응급 대응	상황 파악	① 3일이상 휴업재해	②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③ 재발방지 대책	④ 서류 보존
넘어짐, 끼임, 베임 등 사고발생	응급처치 및 2차재해 예방조치	사고발생 경위 등	3일 이상 출근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제출	대책 수립 등	3년

① **(3일 이상 휴업*재해)**

- 3일 이상 휴업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휴업: 산업재해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②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p30 참고4)

③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재해원인, 발생경위 조사, 대책수립 등

④ **(서류 보존)**

-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은 3년 동안 보존

3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법 제54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0	3,000	3,000



Ⅲ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1 관련 법령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2 개요

☐ **정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업무상재해로 승인될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인정기준**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
-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일 것(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함)

※ 업무상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의함

☐ **대상**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시기**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방법

-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
  - 산업재해 지정병원의 경우 원무과에서 접수 대행 가능

▢ 보상신청 절차

① 업무상 재해 발생	②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	③ 신청사실 통지	④ 재해조사 실시	⑤ 업무상 요양승인 여부 결정	⑥ 승인여부 결정 통지	⑦ 이의 제기
진단 및 치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보험가입자 의견 조회	사실관계 조사	승인여부 결정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소속기관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① **업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발생**
- 의료기관 검사, 진단, 치료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 제출 [재해자 → 근로복지공단]

③ **신청사실 통지**
- 재해보상 신청 사실 통지 및 의견이 있는지 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속기관(보험가입자)]

④ **재해조사 실시**
-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 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 필요시 전문 조사(역학조사) 실시

⑤ **업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 업무상 재해 승인 여부 결정
  (질병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⑥ **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상 요양승인 여부 결정 통지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소속기관]

⑦ **이의제기**
- 신청인(재해자)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참고 1 요양급여신청서(예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12.〉 〈개정 2020. 12. 29.〉〈개정 2021.12.30.〉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요양급여신청서

※ 굵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7일

재해자

성 명(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문명 대문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김산재	751221-1234567
주 소: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0아파트 102동 304호	휴대전화: 010-0000-0000 전화번호: 031-000-0000
재해발생 일 시: 2024년 03월 11일 09시 30분	채용일자: 20△△년 △ 월 △ 일
출근시간: 09:00	퇴근시간: 18:00 / 직 종: 시설 미화원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 – 사업주여부	[√] 해당없음 / [ ] 실제사업주(동업자포함) [ ] 하수급사업주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 – 친인척여부	[√] 해당 없음 / [ ] 배우자 [ ] 부모 [ ] 자녀 [ ] 형제자매 [ ] 기타 친인척( )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신청 구분: [√] 업무상 사고 [ ] 업무상 질병(진폐·CS2 포함) [ ] 출퇴근 재해

사업장명	000학교	사업주명	김사장	연락처(☎)	031-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123-45-67890-1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주소: 경기도 00시 00구 00로 10 000학교

재해 발생 경위(별지사용 가능)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① 위 재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음주, 폭행 등의 사유로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②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재난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③ 위 재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명(이안전), 연락처(010-0000-0000), 재해자와의 관계(동료)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00종합병원 소재지: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종합병원

의료기관명: 00안과 소재지: 경기도 00시 00구 00로 00빌딩 203호

〈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 〉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아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포함]에 제출하는 것을 위임·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위임받는 자(의료기관)
김 산 재 (서명 또는 인)	00종합병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김 산 재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00종합병원 (서명 또는 인)

(뒷 면)

다른보상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1. [ ]예 2. [√]아니오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①에서 "예"라고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기관) 또는 지급처	첨부서류
			①합의서②판결문(또는 결정문)③영수증④기타

안내사항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②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전화,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급여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⑥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대리인 선임 신고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공단의 부가서비스 홍보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안내 및 조사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동의 거부 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수령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공단서비스 안내 및 홍보 (문자, 전자우편, 감사편지)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의료기관명	**5년**

성명 김 산 재 (서명 또는 인)

☐ **공단 및 공단과 계약된 수탁기관의 사회심리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단 또는 공단과 계약된 수탁기관의 사회심리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및 제공 목적	이용 및 제공 항목	이용 및 제공 기간
- **사회심리재활**(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멘토링·희망찾기·사회적응·가족화합프로그램) - **직업재활**(원직복귀지원, 직업훈련, 재취업)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의료기관명	**3년**

성명 김 산 재 (서명 또는 인)

☐ **공단 및 공단이 지정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통한 재활상담, 직업복귀 소견서 제공 등 직장복귀 지원 목적으로** 귀하의 **민감정보·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소속 사업주) 제공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원직장 복귀를 위한「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참여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감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민감정보·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동의 거부 시 재활상담, 직업복귀소견서 제공 등 직장복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직장복귀 지원 안내·재활상담** ·**직장복귀계획 이행을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승인정보제공**	·성명,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산재승인정보(**의료기관명,상병명,요양기간,장해등급,수술여부**),직업복귀소견서	**3년**

성명 김 산 재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Ⅳ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보상 절차를 통해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2 개요

☐ **정의**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신청 시효**

-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5년의 시효
-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는 3년의 시효

☐ 보상신청 절차



①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발생**
- 의료기관 검사, 진단, 치료

② **재해보상 신청**
-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 제출
  [재해자 →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③ **상병경위조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이송**
- 상병경위조사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이송 [소속기관 → 공무원 연금공단]

④ **재해조사 실시**
-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이송 [공무원 연금공단 → 인사혁신처]

⑤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⑥ **승인여부 결정 통지**
-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인사혁신처 → 신청인, 소속기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⑦ **이의제기**
- 신청인(재해자)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

3 과태료 부과기준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3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61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참고 1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예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사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공상공무원 본인 신청 [ ] 본인외 신청([ ] 상속인 [ ] 법정대리인)	
신청인 정보	소속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성명: 0 0 0	주민등록번호(13자리): 000000-0000000
	우편물수령주소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도 00시 00구 00로 00아파트 102동 304호	
	연락처: 휴대전화 010-0000-0000 / 자택전화 031-000-0000 / e-mail yoyang@daum.net	
	①급여 계좌: 금융기관명 00은행 / 예금주 0 0 0 / 계좌번호 000-00-000000	
	② 본인외 신청: **※ 공상공무원 본인과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신청이 어려운 중증 공상공무원 대신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신청을 대행하는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상공무원 소속기관명	공상공무원과의 관계: 공상공무원의 ( )
	공상공무원 성명	공상공무원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신청내용					
	상병발생일시	20△△. △. △. (△△ :△△)		상병발생장소	00학교 급식실
	③ 재해발생정보 상황	[√] 담당직무수행	[ ] 담당외직무수행	[ ] 직무연수(교육,훈련)	[ ] 출장
		[ ] 근무시작전·후	[ ] 휴식시간	[ ] 공적행사	[ ] 그밖의 사고
	형태	[ ] 떨어짐	[√] 넘어짐	[ ] 부딪힘	[ ] 물건에 맞음, 무너짐
		[ ] 끼임	[ ] 절단·베임·찔림	[ ] 감전·폭발·파열·화재	[ ] 깔림·뒤집힘
		[ ] 이상온도접촉	[ ] 빠짐·익사	[ ]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 ] 화학물질 누출·접촉·산소결핍
		[ ] 교통사고	[ ] 체육행사	[ ] 폭력행위	[ ] 동물상해
		[ ] 기타	[ ] 분류불능		
	④ 재해발생경위	**※ 둘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본인 직접 작성("재해발생경위서(지정서식)" 작성 후 제출) 신청인은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위조사서 외에 추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본인 스스로 재해발생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재해발생경위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 지정서식안내: 공단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재해발생경위서(신청자용)"			
		[√] 연금취급기관에서 작성(연금취급기관에서 작성한 경위조사서로 대체) 신청인은 "재해발생경위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위조사서로 대체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⑤신청상병명			⑥신청요양기간(※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도 포함)	
	복사뼈 골절			20△△. △. △. ~ 20△△. △. △.	
				. . . ~ . . .	
				. . . ~ . . .	

⑦ 제3자 가해	[ ] 가해자 있음 [√] 가해자 없음 [ ] 가해자 불명				
	가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주소			연락처
		보험회사명		담당자연락처	사건접수번호
	합의 여부	[ ] 합의 ([ ] 보험 [ ] 일반 [ ] 공탁)		합의금액	합의일자
		[ ] 미합의	소송 여부 [ ] 예 [ ] 아니오	사건번호	관할법원

부지급 조건부

[ ] **부지급 조건부 요양승인신청(요양급여 부지급)**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은 지급받지 않고, 공무상재해 해당여부만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상기 [ ]에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공단이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21조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요양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0 0 0 (서명 또는 인)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⑧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의료법 기록 열람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필수사항

☐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및 의료법 기록열람에 대한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해당 개인정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등이 포함됩니다.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의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에 필요한 본인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을 동의하고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재해급여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일시, 보험금지급내역, 진단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및 민감정보(상병명 등)를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의 효력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날까지로 하며,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⑨ 임의대리인 심의결과 직접통보에 대한 동의

· 본인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신청을 대행하는 임의대리인에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에 대한 내용을 직접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의 대리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우편물수령주소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휴대전화	전화

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년 △월 △일

직 인

(연금취급기관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 ) –

⑪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진단서 2. 진료기록부(응급 및 초진기록지)
신청상병 별 추가서류	신청 상병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촬영한 영상 CD (판독지 포함) (예시) 골절 : CT(없을 경우 X-ray) 인대 및 힘줄 등 손상 : MRI(*없을 경우 CT), 관절내시경 사진, 초음파 영상 척추, 뇌질환 : MRI(*없을 경우 CT) 치아 : 파노라마 및 치근단 사진, 경과기록지(향후 진료소견 포함)
신고 관련 서류	1. 폭 행 : **현행범인체포서, 사건송치서**(*없을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합의서, 상대차량 보험금지급내역서** 3. 공탁금수령시 : **공탁서 및 출급증명서** 4. 민사소송시 : **소장, 판결문 등 관련 서류 일체**

작성방법

1. 신청구분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상속인** :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 **법정대리인** : 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는 자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ex) 친권자, 후견인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 ex)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3)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 ex)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2. ①란에 공무원 또는 유족대표자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진료비 영수증 상 본인이 납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건강보험급여)은 공상승인일부터 약 4~5개월 후에 별도 청구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3. ②란은 공상공무원 본인과 신청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작성하며, 공상공무원의 관계, 공상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십시오.(단,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중증 공상공무원 대신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③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재해발생상황**: 재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선택합니다.
   - **재해발생형태**: 재해가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를 선택합니다.
5. ④란은 신청하는 공무원 스스로 재해발생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기 희망하는 경우, 별도 "재해발생경위서" 서식에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인은 별도의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위조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경위서 서식안내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재해발생경위서(신청자용)"활용)**
6. ⑤란은 진단서상의 상병명 중 신청하고자 하는 확정 진단명과 상병 부위를 구분하여 신청하십시오.
   - (예) 발목 골절(x) → 좌측 발목 골절(o) (좌우 구분이 가능한 진단명에 한함)
   - (예) 상병명 '○○의증'(x) → '확정 진단명'(o)
   - (예) 늑골 골절(x) → 우측 제7번 늑골 골절(o)(구체적인 부위 기재)
   - (예) 요추 추간판탈출증(x) →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구체적인 부위 기재)
7. ⑥란은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도 신청 요양기간에 포함시켜 주시고 신청 요양기간(시작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미기재 시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의 치료기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요양 시작일은 의무기록지의 최초 내원일, 요양종료일은 진단서의 치료기간 종료일)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이 결정됩니다.
8. ⑦란은 제3자 가해자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가해자가 있을 경우 가해자정보(성명, 주민번호(13자리),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없는 경우는 "가해자 없음"에 체크하십시오.)
9. ⑧란의 개인정보 공동이용, 의료법 기록 열람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서명하십시오.(※ 필수사항)
   - 요양승인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등을 확인합니다.
   - 요양승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발송 및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의 송·수신에 활용됩니다.
   - 요양승인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재해가 제3자에 의한 교통사고인 경우 재해급여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과의 개인신용정보 및 민감정보 자료(교통사고 발생일시, 보험금지급내역, 진단정보 등)의 송·수신에 활용됩니다.
10. ⑨란은 신청인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신청을 대행하는 임의대리인(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에게 심의결과를 직접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의하시는 경우 반드시 임의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연금취급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⑩란의 연금취급기관장 확인(직인날인)없이 공단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2. ⑪란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심사에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청구서 보낼 곳(우편)

부서명	우편번호	주 소
재해보상실	061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8층 재해보상실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서식 안내

·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주요사업 → 재해보상
·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인터넷 청구 안내

·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종합재해보상시스템 → 요양급여 → 공무상 요양 승인 클릭 → 신청서 작성

☐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참고 2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재해 및 공무상 재해 보상 신청 방법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보상 신청 절차 안내



구분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신청 요건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였을 때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 신청 절차	① 업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발생 의료기관 검사/진단/치료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 제출 (재해자 → 근로복지공단) ▼ ③ 신청 사실 통지 재해보상 신청 사실 통지 및 의견이 있는지 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속기관(보험가입자)] ▼ ④ 재해조사 실시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 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 필요시 전문 조사(역학 조사) 실시 ▼ ⑤ 업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업무상 재해 승인 여부 결정 (질병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⑥ 승인여부 결정 통지 업무상 요양승인 여부 결정 통지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소속기관) ▼ ⑦ 이의제기 신청인(재해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	①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발생 의료기관 검사/진단/치료 ▼ ② 재해보상 신청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 제출 [재해자 →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③ 상병경위조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이송 상병경위조사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이송 (소속기관 → 공무원 연금공단) ▼ ④ 재해조사 실시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이송 (연금 공단 → 인사혁신처) ▼ ⑤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⑥ 승인여부 결정 통지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인사혁신처 → 신청인, 소속기관, 연금공단) ▼ ⑦ 이의제기 신청인(재해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
담당 기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www.comwel.or.kr 1588-007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문의 www.geps.or.kr 1588-4321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제4장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4장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Ⅰ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2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 **정의**

- 법령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 요약서
-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

☐ **내용**

- (법령의 요지) [참고]
- (안전보건관리규정) 부록 Ⅱ

☐ **업무추진 방법**

-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및 부착
  * 휴게실, 안전보건정보 게시판, 급식실 입구 등
- 근로자에게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장소에 대해 알리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정보 반영

3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법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참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개정)



자율 균형 미래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연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	제6조(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	
2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22조(산업보건의)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의 착용·점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사, 보건관리사, 산업보건의 등 선임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업무 수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4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비사무직(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근로자(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근로자(4시간 이상), 그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2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6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7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8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내는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함 - 금지표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등 - 경고표지: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낙하물 등 - 지시표지: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보안경/보안면 착용 등 - 안내표지: 비상구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9	제38조(안전조치)	▶ 기계·기구/인화성 물질/전기/중량물 취급/추락/붕괴/낙하물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	제39조(보건조치)	▶ 증기/분진/흄/방사선/고온/소음/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환기/채광/보온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1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함 (보호구 착용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
12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 및 팩스 보고)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미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미보고· 거짓보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
13	제57조(산업재해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산업재해 발생시(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재해발생(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 700만원 과태료 **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거짓보고:** 1,500만원 과태료
14	제93조(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설비[프레스, 절단기, 리프트,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등]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 검사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5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또는 비치 ▶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	**미게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미교육:** 300만원 이하 과태료
16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소음(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 ▶ 측정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벌금
17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500만원 이하 과태료
18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유해인자별 6개월 ~ 2년 1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9	제164조(서류의 보존)	▶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작업환경측정 결과,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5년간 보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제5장
안전보건교육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5장 안전보건교육

Ⅰ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안전보건교육규정)

2 개요

☐ **교육 종류**

-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이 전환될 때 (예 : ❶ 미화 → 급식으로 직무 전환, ❷ 승진, 인사 이동으로 관리감독자가 최초로 지정된 때)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현업업무종사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현업업무 종사자)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현업업무 종사자)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16시간 중 온라인 교육을 8시간 수강한 경우 반드시 집체로 8시간을 수강해야 함.

** **경기도교육청 내 같은 직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교육시간 50% 면제

▢ 교육 방법

교육 방법		내 용
현장교육		각급기관 근무 장소에서 관리감독자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집체교육	자체교육	각급 기관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
	위탁교육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 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원격교육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우편교육		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 교재를 이용하여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감독자 교육

▢ 교육 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현업업무 종사자	정기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		교육내용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 시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3 교육 추진

▢ 추진 절차

① 교육대상 확인	② 교육방법 선정	③ 교육실시	④ 서류보존
현업업무종사자 관리감독자	위탁, 집체 현장, 온라인, 우편교육	정기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서류기록보존 (5년 권장*)

① **교육대상 확인**

- **(현업업무종사자)**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② **교육 시간 및 방법 선정**

-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교육시간에 맞춰 실시
- **(교육 방법)** 현장교육, 집체교육, 위탁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교육 중 현장 여건에 맞는 교육방법 선정

③ **교육실시**

- **(강사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따른 자격이 있는 강사 지정

④ **서류보존**

- 교육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수증, 이수 확인 공문, 자체 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행위	세부 내용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 당	50	250	500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참고 **안전보건교육 일지(예시)**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일자 : 2000. 00. 00. (작성자 :)

교육일시	20△△년 △△월 △△일 00시 00분 ~ 00시 00분				
교육구분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신규채용자 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기타(MSDS)교육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비고 (교육 미실시 사유)
	대상인원				
	참석인원				
	미참석인원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사용교재 등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집체교육	1시간
교육실시자 (자체교육)	성명	직위		교육장소	

■ 수강자 명단

순번	소 속	성 명	서 명	순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 교육사진

제6장
물질안전보건자료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6장 물질안전보건자료

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올바른 게시·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2 개요

☐ **정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 16가지**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7. 취급 및 저장 방법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유해성·위험성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3. 폐기 시 주의사항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9. 물리화학적 특성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4. 응급조치 요령	10. 안정성 및 반응성	15. 법적 규제현황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11. 독성에 관한 정보	16. 그 밖의 참고사항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경고표시
  - 화학물질을 담은 포장 및 용기에 유해·위험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기재하여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표시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제품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게시

▢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물리적 인자 등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제품)

▢ 제외대상[참고1 참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3 게시 및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관리 절차

① 대상제품 파악 및 목록 작성	② 물질안전 보건자료 확보	③ 물질안전 보건자료 게시	④ 관리요령 게시	⑤ 경고표시 부착	⑥ 물질안전 보건자료 교육 및 서류 보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장소 파악 후 목록화	제조사 또는 공급자에게 요청	제품취급장소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취급하는 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경고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경고표시 부착	대상물질별 교육 실시 및 서류 기록 보존

① **대상 제품파악 및 목록 작성***

-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화학제품의 목록 정리(제품명, 회사명, 사용용도, 보관장소 등)
- 사용하지 않는 화학제품은 폐기 처리(창고에 방치된 화학제품 등)

*** (예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목록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목록

번호	제품명	제조/공급/유통업자	용도	비고
1	PUP 750 K B3	피셔코리아주식회사	창틀고정 및 채움 등	
2	우레탄 신나 DR-700L	㈜노루페인트	우레탄 도료용 신나	
3	우레탄폼(오공폼, 오공폼E, 오공폼PLUS)	㈜오공	필러, 퍼티, 접토 등	
4	CR-13	조선선재(주)	구조물의 화장용접	
5	숲으로에이스외부용-2290	㈜케이씨씨	콘크리트 등의 외부용 수성상도	
6	7200에나멜 유광 백색(KSM6020-2종유광2급)(E101-W0001N)	강남제비스코(주)	일반 철재용 상도마감(외부용)	
7	D-5250	대흥화학공업(주)	금속,목재 등의 접착	
8	레미탈(GP400)	한일시멘트(주)	단열재 및 건축용 재료	
9	Kerosene	지에스칼텍스(주)	연료 및 연료 첨가제	
10	경유(0.05%)	SK에너지주식회사	연료, 솔벤트	
11	일신 스마트폼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고정 및 단열·방음 등	
12	건축용 실링재 NURI N2000 SEALANT	㈜누리켐	건축용 실링재	

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사 또는 납품하는 공급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청**
  - 제조사 홈페이지(자료실) 검색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다운로드
  - 제조사에 유선연락 또는 온라인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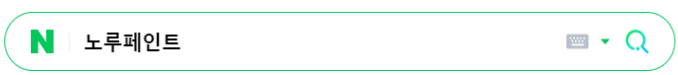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하여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항상 *최신자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작성일자 등을 점검하여 구입처에 최신자료인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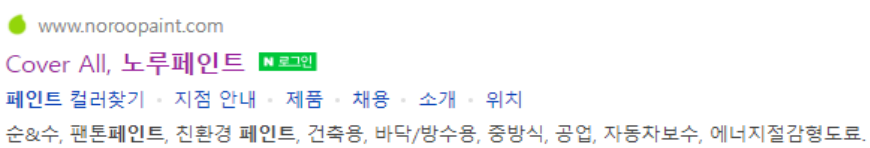
  * 2013. 7. 1.부터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기존의 MSDS를 사용할 수 없으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GHS(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경고표시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는 기준)기준의 MSDS를 사용하여야 함

*** (예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우레탄 신나 DR-700L)**

①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사 검색



② 제조사 홈페이지 접속



③ 홈페이지 메뉴에서 MSDS 자료 제공 항목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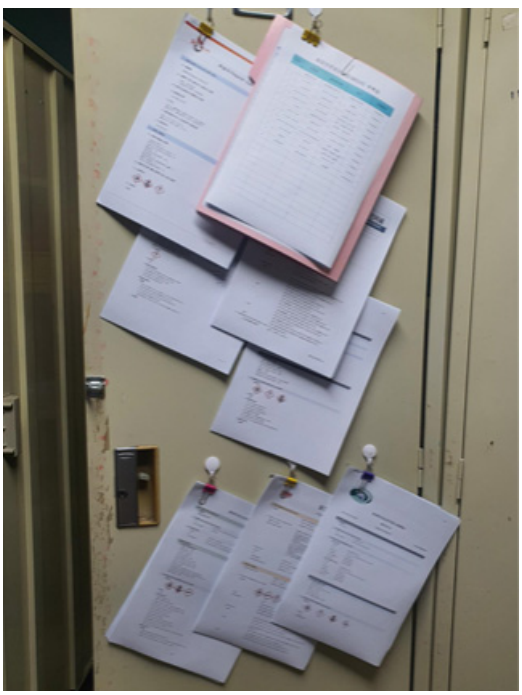
④ 제품 검색 및 자료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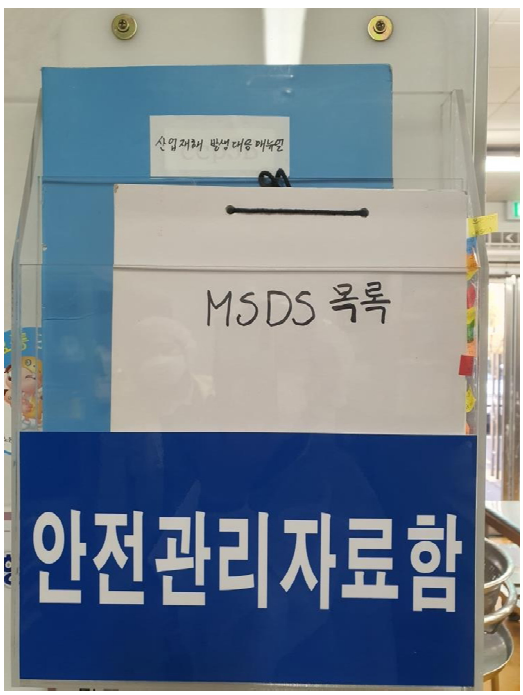


③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장소 또는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예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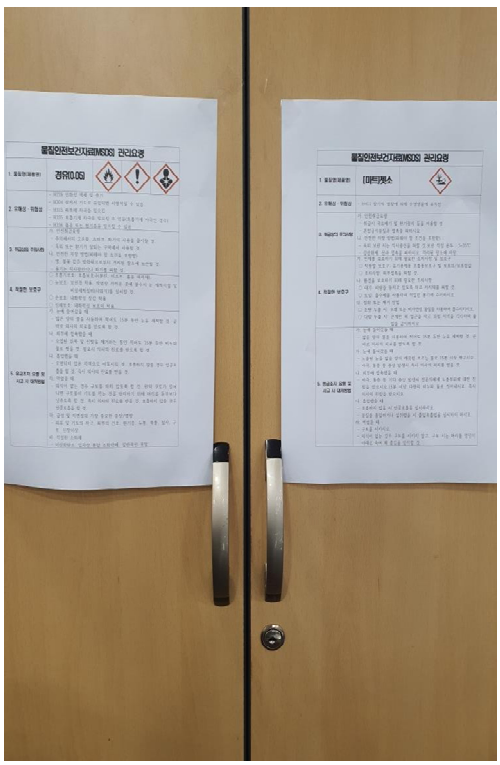


④ **관리요령 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공정별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
  - 관리요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제품명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 (예시) 관리요령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요령		
1. 물질명(제품명)	경유(0.05)	
2. 유해성 · 위험성	-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호흡기계 자극인 경우) -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3.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안전취급요령 - 주의깊게 고온물, 스파크, 화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 - 옥외 또는 환기가 잘되는 구역에서 사용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열, 불꽃 같은 발화원으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보관할 것. - 용기는 직사광선이나 화기를 피할 것.	
4. 적절한 보호구	○ 호흡기보호: 호흡보호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 눈보호: 보안경 착용, 작업장 가까운 곳에 본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 손보호: 내화학성 장갑 착용 ○ 신체보호: 내화학성 보호의 착용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제거하는 동안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다. 흡입했을 때 -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라. 먹었을 때 - 의식이 없는 경우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 피부 및 기도의 자극, 피부의 건조, 현기증, 두통, 복통, 설사, 구토, 신장이상. 바. 적절한 소화제 - 이산화탄소, 입자상 본말 소화약제, 일반적인 포말	



⑤ **경고표시* 부착**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부착

※ 해당 용기 또는 포장에(제조사가 작성한) 경고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부착하지 않음

• 경고표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표시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예시) 경고표시**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서류 보존**

- 교육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화학물질·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
- 교육시기
  -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교육일지(붙임 참조)
  - 3년간 보존(교육시간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1)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2) 공급·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비치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 1개소당)	10	20	50
법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법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1)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2)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는 경우	10	2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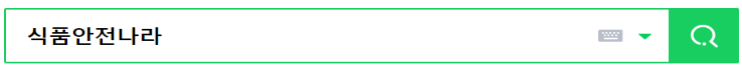


참고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확인 방법

■ 「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과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품목제조보고 대상인 식품첨가물 및 위생용품만 확인 가능

① 식품안전나라 검색



② 홈페이지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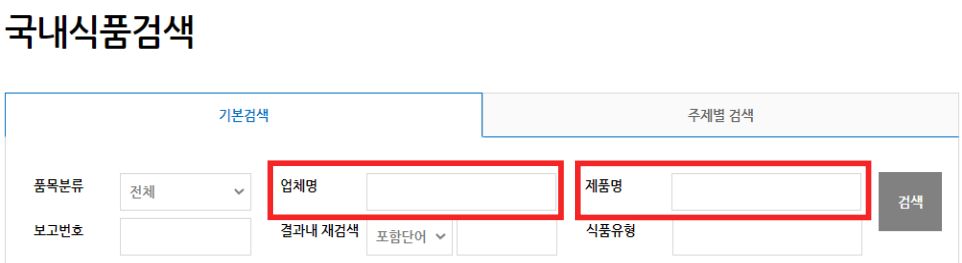


③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문정보 → 업체 및 제품검색 → 국내식품 검색 클릭



④ 업체명 또는 제품명을 검색

☞ 검색결과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과 일치(품목보고번호, 업체명, 제품명)하는 경우 MSDS 게시 및 교육대상 아님



[예시] ㈜유한크로락스 회사의 유한락스 레귤러를 사용하는 경우

① 국내식품검색에 ㈜유한크로락스 또는 유한락스 레귤러 검색

② 제품용기 설명에 기재된 품목보고번호, 업체명, 제품명이 일치 하는지 확인

③ 검색결과가 사용하는 제품과 일치 → MSDS 게시 및 교육대상 아님



국내식품검색

기본검색 | 주제별 검색

품목분류: 전체 | 업체명: (주)유한크로락스 | 제품명: | 검색

보고번호: | 결과내 재검색: 포함단0 | 식품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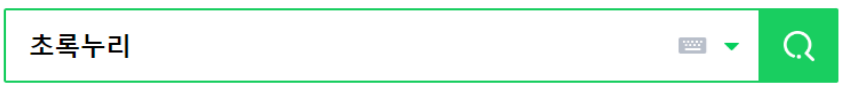
총 1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식품(첨가물) 데이터는 내수용과 겸용(단 수출용 제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소명 정렬 | 제품명 정렬 | 최근등록순 | 10개씩

번호	품목보고번호	업소명	품목유형	유통/소비기한	제품명	분류
18	200593640022	(주)유한크로락스	과일.채소용 세척제	해당없음(통상 3년)	그린웍스 주방세제 쿨시트러스향	위생용품
17	200593640023	(주)유한크로락스	과일.채소용 세척제	해당없음(통상 3년)	그린웍스 천연 주방세제	위생용품
16	1972020201014	(주)유한크로락스	차아염소산나트륨	해당없음.	아비타 레귤러	식품
15	197202020101	(주)유한크로락스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통기간미등록	유한락스	식품
14	200593640021	(주)유한크로락스	2종 세척제	제조사문의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위생용품
13	197202020104	(주)유한크로락스	차아염소산나트륨	15개월	유한락스 레귤러	식품
12	1972020201013	(주)유한크로락스	식품첨가물과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해당없음	유한락스 멀티액션 레귤러	식품
11	1972020201017	(주)유한크로락스	혼합제제	해당없음	유한락스 소프트	식품
10	1972020201016	(주)유한크로락스	차아염소산나트륨	해당없음	유한락스 오리지날	식품
9	197202020109	(주)유한크로락스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제조일로부터 9개월	유한락스 주방용	식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인지 해당 여부 확인 방법

① 초록누리 검색



② 홈페이지 접속

ecolife.me.go.kr

초록누리

화학물질 조회 · 공지사항 ·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 시스템소개 · 자발적 협약 · 자료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환경안전지도, 위해우려제품 조회 등 제공.

③ 홈페이지 메뉴에서 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정보(이력) 클릭



④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19년~, 환경부)에서 제품명 또는 업체명 검색

☞ 검색결과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과 일치(제품명, 품목, 업체명, 신고번호)하는 경우 MSDS 게시 및 교육대상 아님



※ 법 개정 이전 제품에 대한 정보는 위해우려제품(15~18년 관리제품), 살균·구제제품은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19년~,환경부)에서 검색

[예시] 벡스인터코퍼레이션㈜ 회사의 WD-40을 사용하는 경우

① 국내식품검색에 벡스인터코퍼레이션㈜ 또는 WD-40 검색

② 제품용기 설명에 기재된 제품명, 품목, 업체명, 신고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③ 검색결과가 사용하는 제품과 일치

→ MSDS 게시 및 교육대상 아님



화학제품

- 화학제품 안전정보
-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이력
  - 위해우려제품 (15~18년 관리제품)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19년~, 환경부)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19년~, 환경부)
- 위반제품
- 생활화학제품 사고 목록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19년~)

HOME 〉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이력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중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30일 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가 필요한 제품으로, 이 페이지에선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신고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확인하기)

전체 | 벡스인터코퍼레이션 | 검색

· 총 23 건 ○ 모델명순 ○ 품목순 정렬

번호	제품명	품목	업체명	신고번호
23	더블유디-40	세정제,녹 방지제,윤활제	벡스인터코퍼레이션㈜/직접생산	CB19-01-0711
22	베이비아쿠아(babyAQUA)	세정제,탈취제,살균제	벡스인터코퍼레이션㈜/직접생산	CB22-21-0222
21	베이비아쿠아(babyAQUA)	살균제	벡스인터코퍼레이션㈜/직접생산	CB22-21-0222
20	비앤비 무알콜 제균스프레이	탈취제,살균제	벡스인터코퍼레이션㈜/ODM	CB19-13-0418
19	더블유디-40 스페셜리스트 바이크 체인 루브(WD-40 Specialist Bike Chain Lube)	특수목적코팅제,녹 방지제,윤활제	벡스인터코퍼레이션㈜/	CB21-07-1237
18	더블유디-40 스페셜리스트 바이크 웻 체인 루브(WD-40 Specialist Bike Wet Chain Lube)	특수목적코팅제,윤활제	벡스인터코퍼레이션㈜/	CB21-07-1200

참고 2 안전보건교육일지(물질안전보건자료) 서식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일자 : 2000. 00. 00. (작성자 :)

교육일시	20△△. △△. △△. (00시 00분 ~ 00시 00분)					
교육구분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신규채용자 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기타(MSDS)교육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비고 (교육 미실시 사유)	
	대상인원					
	참석인원					
	미참석인원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집체교육	1시간	
교육실시자 (자체교육)	성명	직위		교육장소		

■ 수강자 명단

순번	소 속	성 명	서 명	순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 교육사진

참고 3 그림문자

	**인화성물질** -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및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체
	**산화성물질** -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물질
	**고압가스** - 20℃, 200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
	**부식성물질** - 금속을 부식시켜 손상을 주는 물질, 눈·피부에 비가역적인 변화(괴사, 조직 손상)를 주는 물질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 암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영향을 일으키거나 흡입되어 기도에 과민반응 등을 발생시키는 물질
	**경고** - 자극성은 피부 또는 눈에 회복 가능한 손상을 일으키거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킴
	**폭발성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
	**수생환경유해성물질** - 단기간 또는 수생생물의 생활주기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노출시켰을 때 수생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급성독성물질** - 짧은 시간에 입·피부·호흡기를 통하여 노출되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물질

제7장
위험성평가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7장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2 개요

☐ **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전사업장

☐ **실시 시기**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설비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평가방법

-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Checklist)법
-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 추진 절차

① 사전준비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및 보존
• 실시규정 작성 • 정보 수집	•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수준의 판단 •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행 • 가능한 낮은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	• 3년간 보존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안전보건정보 수집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정보 등
· 작업표준, 작업절차,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설문조사의 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등을 통한 방법

③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에 정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결정된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 감소대책에 대한 실행 및 개선
-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

⑤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의 결과서는 **3년간 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한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 공유

·위험성 결정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3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8장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8장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2 개요

☐ **정의**

- 근골격계부담작업*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참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 근골격계질환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조사하는 것
- 중량의 표시
  -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는 것

▢ 조사대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조사시기

- 정기조사: 매 3년마다 실시, 신설 사업장의 경우 1년 이내 실시
- 수시조사: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3 조사 절차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절차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확인	② 유해요인조사 실시	③ 작업환경 개선 등 사후조치	④ 기록 및 보관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부담 작업 해당 여부 확인	유해요인조사표 (작업장상황·작업조건 등) 및 증상조사표 작성	중요성·긴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및 사후조치 실시	유해요인조사결과 기록 및 보관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확인**

-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부담작업 여부 확인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참고자료 참조)만 유해요인조사 진행

※ 단기간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은 제외 가능

② **유해요인조사 실시**

- 유해요인조사표 작성
  - 근로자 면담 및 작업관찰을 통해 작업장 상황(작업공정,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과 작업조건(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등) 조사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 증상과 징후, 직업력, 근무형태, 취미활동, 과거질병력 등 조사

③ **작업환경 개선 등 사후 조치**

- 유해요인 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성·긴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및 사후조치 실시

④ **기록 및 보관**

- 유해요인조사결과 기록 및 보관(5년간 보존)

4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



참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근골격계부담작업)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9장
작업환경측정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9장 작업환경측정

Ⅰ 작업환경측정

-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

1 관련 법령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 **학교급식실 산업안전 관련 시도교육청 협조 요청사항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4299](2021.6.2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작업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환경개선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한정된 것이 아닌 사업장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차원에서 실시

2 개요

☐ **정의**

-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 지 측정·평가

☐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측정주기

- 최초 측정(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후 6개월마다 측정
  * 측정결과에 따라 측정주기가 변경될 수 있음

3 측정 절차

① 측정 대상물질 확인	② 예비조사	③ 작업환경측정 실시	④ 결과확인 및 서류보존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 작업환경측정 의뢰 • 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실시	•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측정기구 등을 선정하여 실시	• 측정 결과 확인 • 서류보존(5년)

① **측정 대상물질 확인**

-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성 성분을 확인하여 대상물질 파악

② **예비조사**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작업정보 제공
- 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실시
  - 현황조사(측정대상 근로자 현황 및 공정별 작업내용, 유해인자의 발생주기 등) 실시
  - 측정 대상 제외 여부 확인(작업시간, 허용 소비량 등)

작업환경측정 제외 사업장

◦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허용소비량: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g)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를 15로 나눈 양

◦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 단시간 작업: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③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시료채취위치, 측정기구, 측정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 실시

④ **결과확인 및 서류보존**

-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및 근로자에게 알림
-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 보존: 5년간 보존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참고 1 작업환경측정 실시(사진)





참고 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나. 금속류(24종)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나. 곡물 분진(Grain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바. 용접 흄(Welding fume)
   사. 유리섬유(Glass fibers)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장
안전보건표지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10장 안전보건표지

Ⅰ 안전·보건표지

- 유해·위험장소, 물체와 시설 등을 쉽게 인식하고 식별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행동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9]

2 개요

☐ **정의**

-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

☐ **종류 및 형태**

- 종류: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 금지표지: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방화, 소화의 설치를 표시
  - 경고표지: 직접적으로 위험한 것 및 장소 또는 상태에 대한 경고

- 지시표지: 불안정한행위, 부주의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
- 안내표지: 응급구호표지, 방향표지, 지도표지 등

◎ 형태: [참고 1]

▢ 업무추진 방법

◎ 각 기관(학교)의 **작업장 내 필요한 장소**(해당 유해위험이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 스티커 설치·부착 [참고2]**

※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시 주의사항
-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물체에 설치 · 부착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부착
-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됨

◎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 탑재 위치: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goe.go.kr)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학교안전과) 101번 게시글

3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거나** 설치·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1개소당	10	30	50

참고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문자 추가시 예시문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참고 2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 설치·부착 (예시)



부착 전



부착 후



부착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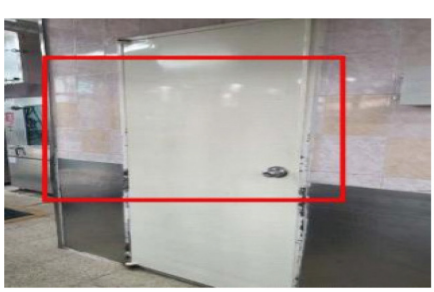
부착 후



부착 전



부착 후



부착 전



부착 후

제11장
보호구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11장 보호구

Ⅰ 보호구

-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2 개요

☐ **정의**

- 개인보호구는 근로자가 신체에 직접 착용하여 각종 물리적·기계적·화학적·인간공학적 위험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

☐ **보호구 종류와 적용 작업**

종류	구분	적용작업
안전모	ABE형 (떨어짐, 물체에 맞음, 감전 예방)	• 물체에 맞음 및 떨어짐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 • 전기 작업 시
발 보호구	발등보호 안전장화, 미끄러짐 방지 안전장화	• 물체의 떨어짐,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찔림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 물, 기름 등으로 인해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

종류	구분	적용작업
안면 보호구	전면형	• 기름이나 물이 얼굴로 튀는 작업 시
	고글형	• 비산물이나 화학물질 사용 작업 시
보호복	방수 앞치마	• 물 사용 작업 시
	보호복	• 화학물질 사용 작업 시
안전대	벨트식, 그네식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손(팔) 보호구	고무장갑	• 물 사용 작업 시
	내화학장갑	• 화학물질 사용 작업 시
	팔토시	• 기름이나 뜨거운 물질 취급 시
호흡기 보호구	방진 마스크	•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
청력 보호구	귀덮개, 귀마개	•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

3 업무 절차

☐ 업무 흐름도

① 대상작업 파악	② 보호구 선정 및 구입	③ 보호구 지급	④ 서류 보존
유해·위험 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계획 수립	보호구 지급 및 교육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존 (3년 보존 권장)

① **대상작업 파악**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위험 작업 파악

②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작업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선정 및 구입 계획 수립
  - 작업 시 유해·위험 노출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보호구를 선정하고, 해당하는 종류 및 지급 수량 등을 파악하여 구입 계획을 수립
  - 보호구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로 지급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충분한 수량 구매

③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 보호구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근로자 수 이상의 수량을 준비
  - 보호구의 성능과 관리 방법, 착용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 작업 중 해당 보호구는 계속 착용

④ **서류보존**

- 보호구 지급 대장 관리 서류: 3년간 보존 권장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40조(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관리감독자)로부터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5	10	15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참고 1 보호구 종류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 "교안-현장작업자를 위한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참고 2 보호구 지급 대장

NO.	이름	성별	지급날짜	지 급 품 목						비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절연장갑	방진 마스크	보안면	
1	홍길동	남	24.00.00.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	X	
2										



제12장

근로자 건강관리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12장 근로자 건강관리

Ⅰ 근로자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의학적 조치를 하기 위함

1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2 개요

☐ **정의**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거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음

◎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 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 [참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건강진단 대상 및 시기

	대상	시기 및 주기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참조

3 절차

▢ 일반건강진단 절차

① 대상 근로자 선정	② 건강진단 안내	③ 건강진단 실시	④ 서류보존
비사무직: 1년 1회 사무직: 2년 1회	검진 대상자 안내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5년간 보존

-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 특수 건강진단 절차

① 검진 대상물질 확인	② 대상 근로자 선정	③ 건강진단 실시	④ 서류보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사용 여부 확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해당 유해인자별 특수·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5년간 보존

참고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시행규칙 별표 23)**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릴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법 제1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5	10	15

Ⅱ 산업보건의 운영

-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둠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산업보건의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1호, 2020.1.6. 일부개정)**

2 개요

☐ **정의**

- 사업장에서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의사

☐ **산업보건의의 선임**

-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음

☐ **산업보건의 자격**

- 직업환경의학·예방의학과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 **산업보건의 직무**

-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담당근로자 수**

-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

3 운영 현황

☐ **대상교(기관): 전기관**

☐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현업업무종사자 29개 직종**

☐ **상담내용**

-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 건강검진 결과 설명 및 건강관리 교육
- 기저질환 및 복용 중인 약물을 통해 현재 건강관리 점검
- 혈압·혈당 측정을 통한 질병 예방과 생활 습관 관리
- 잠재적 건강 위험 요소 발견하여 의학적 조치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추후 개별 전화상담 진행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Ⅲ 근로자 건강센터 업무협약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함

1 관련 근거

☐ **경기도교육청-경기지역 5개 근로자건강센터 업무 협약(2017.7.17.)**

☐ **경기도교육청-경기지역 5개 근로자건강센터 업무 협약 연장(2020.7.17.~)**

※ 업무협약 내용

- 경기도교육청 : 각종 정보 제공, 사업 및 참여 방법 안내 등 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산업보건 정보 제공, 직업환경관련 상담 등 산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무상 지원



2 이용안내

근로자건강센터 이용안내

현업업무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근로자건강센터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직업환경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
이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 누구나
이용요금	전액 무료
운영기간	연중(토·일, 공휴일은 제외)



근로자건강센터 추진 사업

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상담	뇌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	스트레스 예방관리
- 직업병 상담 및 조기발견 - 직업병 등 관련자료 전시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사후관리	-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운동 프로그램 운영 - 식생활 프로그램 운영	- 초기증상 호소자 등록관리 - 증상조사 및 사후관리 - 운동요법을 통한 예방 관리	-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안내 및 상담 - 장시간 및 야근 근로자 상담·지도 - 유해물질 관리 지도	- 직무 스트레스 평가 - 개인별 1:1 전문상담 실시 -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추진

근로자건강센터 프로그램 참여 방법

- 경기지역 5개 근로자건강센터의 관할구역에 따라 학교 소재지의 해당 지역 센터 프로그램 참여
- 센터 프로그램 참여 희망 시 해당 센터로 직접 참여 신청(센터별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참여 인원에 따라 센터 내방 또는 학교 방문 프로그램 시행

경기지역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현황

권역별	관할구역	소재지	연락처 (운영시간)
동부	광주시, 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4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 12층(성남산업단지 內)	031-739-9301 (8:30~19:00)
		(분소)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펙스A동	031-698-2990 (9:00~18:00)
서부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사 3층	031-364-7688, 7680 (9:00~18:00)
남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 205호	031-205-8960 (8:30~17:30)
		(분소)평택시 산단로 58번길 성은상가 1층	031-663-8953 (8:30~17:30)
북부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검준산업지원센터 4층	031-858-9030 (8:00~20:00)
		(분소)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단로70번길 6, 2층	031-572-9032 (8:00~20:00)
부천	김포시, 부천시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22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301호(기업은행 3층)	032-329-9161 (9:00~19:00)
		(분소)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이젠지식센터 243호	031-999-7602 (8:30~17:30)
		(분소)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13 유호프라자 2층	031-998-9165 (8:30~17:30)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제12장

부 록

C·O·N·T·E·N·T·S

Ⅰ. 법령체계도
Ⅱ. 안전보건관리규정
Ⅲ. Q&A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13장 부록

Ⅰ 법령체계도 | 법령, 행정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안전보건교육규정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 공공행정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안전보건교육규정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행정규칙**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자치법규**

-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2022. 4.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목 차

제1장 총칙 ····· 122
제1조(목적) ····· 122
제2조(정의) ····· 122
제3조(적용범위) ····· 123
제4조(안전·보건 방침) ····· 123
제5조(재해예방 의무) ····· 123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 123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 123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23
제8조(지역총괄관리자) ····· 124
제9조(관리감독자) ····· 124
제10조(업무관리자) ····· 125
제11조(산업안전보건업무지원) ····· 125
제12조(업무담당자) ····· 125
제13조(안전관리자) ····· 125
제14조(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126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27

제3장 안전·보건교육 ····· 127
제16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 127
제17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128
제18조(직무교육) ····· 128
제19조(교육결과 기록·보존) ····· 128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 129
제20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129
제21조(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 129
제22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 129
제23조(작업중지) ····· 130
제24조(안전보건표지) ····· 130
제25조(안전보건점검 등) ····· 130

목 차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 131
제26조(근로자 건강진단) ····· 131
제27조(작업환경측정) ····· 131
제28조(근골격계질환 예방) ····· 132
제29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 132
제30조(보호구) ····· 132
제31조(구급용구) ····· 133
제3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133
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 133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 133
제34조(산업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 133
제3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133
제36조(비상연락망 구축) ····· 134
제37조(재해발생현황분석 등) ····· 134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134
제38조(위험성평가 계획의 수립) ····· 134
제39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실행) ····· 134
제40조(위험성평가의 주기) ····· 134
제41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 135

제8장 보칙 ····· 135
제42조(포상 및 징계) ····· 135
제43조(문서의 보존연한) ····· 136
제44조(규정의 개정 등) ····· 136
제45조(규정의 준수 등) ····· 136

부칙 ····· 136
제1조(시행일) ····· 136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137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직종 ····· 138
[별표 3] 안전보건교육일지(예시) ····· 139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교육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란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기계적 설비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행동을 말한다.
6.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 · 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7.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부상, 사망 및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8.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감 소속 사업장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 방침】 사업장의 안전·보건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은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장의 안전보건사무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4.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는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가진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①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2.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전문 인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배치

② 근로자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규정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 이행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부교육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직종별 사업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지역총괄관리자】 ① 사업주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총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총괄관리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보고
3. 해당 지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실태조사
4. 해당 지역 사업장의 산업재해 통계분석
5. 해당 지역의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정책 이행

③ 지역총괄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한다.

④ 지역총괄관리자는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내 총괄부서 및 직종별 사업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각급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업무관리자】 ① 사업주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 및 교육지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업무관리자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은 총무담당사무관, 교육지원청은 지역총괄관리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제9조의 관리감독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업무지원】 ①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협조하고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업무지원(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업무지원(부서)는 각급 학교의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교무실·행정실로 하며, 각 소속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협조하고 지원한다.

제12조【업무담당자】①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급식관련 직종은 영양(교)사, 시설·기타직종은 시설·기타 업무담당(자)로 하며, 관련법령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통솔 범위에 근거하여 부서별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에게 지도·조언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4조【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에게 지도·조언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와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① 사업주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대상 교육과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 대상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교육 종류는 다음[표]와 같다.

[표] 안전보건교육 종류

구분	교육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 (법29조)	근로자	신규채용자	8시간(일용직 1시간)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현장교육
		정기교육	6시간/분기	
		작업변경시	2시간(일용직 1시간)	
		관리감독자 (업무관리자)	16시간/연간	집체교육, 혼합(온라인+집체)교육 우편교육
직무교육 (법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6시간/2년	집체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신규교육 34시간 보수교육 24시간/2년	

제17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정기교육 : 근로자는 매분기(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 교육 :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기 전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9조【교육결과 기록·보존】 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별표3 참조]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0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21조【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작업 안전 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긴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안전보건표지】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가 관리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항상 안전보건표지 사항을 숙지하고,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점검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점검방법은 점검표 등 별도 서식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하며,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계·기구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및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등의 취급,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등의 상태
7.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장의 점검 결과 불안전한 시설 등이 있으면 조치사항을 해당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개선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6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다.

⑤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누락 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 작업환경측정결과는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하며 유해요인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②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작업 자세 등을 유지하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가 교육 및 주지시키는 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협조한다.

④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⑤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매 3년 마다 실시하고, 신설학교는 1년 이내 실시한다.

⑥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근골격계지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의 변경시 해당공정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①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사 혹은 납품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소분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한다.

③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최근 개정일 자료로 유지 관리한다.

제30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보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③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 시에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31조【구급용구】①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혈대, 부목 및 들것
4. 화상약

② 관리감독자 및 업무관리자는 필요 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3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①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정리정돈, 청소, 조도, 환기, 온도, 습도,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확인 · 감독·조치한다.

②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적절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 · 감독·조치한다.

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4조【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수립·시행한다.

제3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 관련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 대책(재해발생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포함)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업무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비상연락망 구축】 사업주는 비상사태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재해발생현황분석 등】 사업주는 상·하반기에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38조【위험성평가 계획의 수립】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40조【위험성평가의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1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장 보칙

제42조【포상 및 징계】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기여한 우수 부서 또는 공로자에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4. 그 밖에 상기 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③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제43조【문서의 보존연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8호의 경우 2년, 제6호, 제7호의 경우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44조【규정의 개정 등】 사업주는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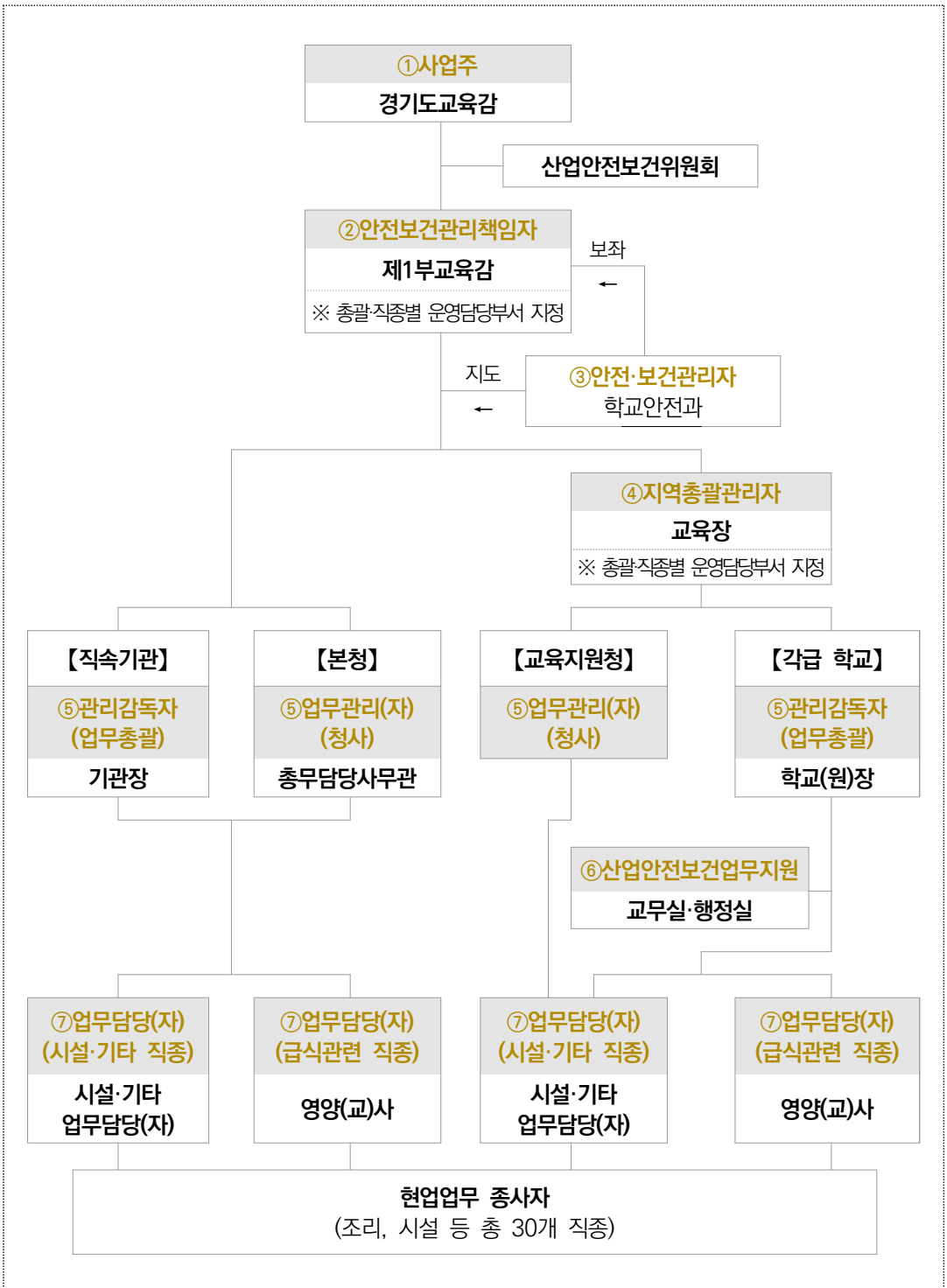
제45조【규정의 준수 등】 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②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직종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구분	직군/직렬/직종명		근거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조리사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조리실무사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각급학교장애인일자리사업(급식보조)		고시 [별표2] 3호
	급식배식보조원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청소원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시설관리(보조원) *구육성회(시설) 포함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특수운영직군(시설경비원)		고시 [별표1] 1호, [별표2] 2호
	특수운영직군(시설당직원)		고시 [별표1] 1호, [별표2] 2호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특수운영직군(시설안내원)		고시 [별표1] 1호
	안내원		고시 [별표1] 1호
	당직전담(경비)원		고시 [별표1] 1호, [별표2] 2호
	통학차량운전원		고시 [별표2] 2호
	통학차량보조원		고시 [별표2] 2호
지방공무원	기술직군	시설관리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농업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식품위생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공업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조리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운전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방송통신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건축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전기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기계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열관리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화공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농림운영	고시 [별표1] 1호, [별표2] 1호
국가공무원	영양교사		고시 [별표1] 6호, [별표2] 3호

※ 각 직종 대체직 포함, 수업과 행정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 제외

별표 3 안전보건교육 일지 (예시)

안전보건교육일지

결재			

작성일자: 20 . . . 작성자 :

교육일시					
교육구분	1. 신규채용자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일용근로자 외: 8시간) 2. 근로자 정기교육 (□비사무직:*6시간*)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해당근로자: 2시간) 5. 기타(MSDS)교육 □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비고 (교육 미실시 사유)
	대상인원				
	참석인원				
	미참석인원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 *근로자 건강 관리(각종 질환 및 응급 처치)* • *산업재해 인정 사례 및 예방* • *학교 안전 관리(전기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경고표지 등)* • *위험 물질 취급 관리 및 MSDS*	*집체교육 (강의식)*	*90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종류 및 그 유해성, 위험성* –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응급조치 및 긴급대피 요령*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이해하는 방법*	*집체교육 (강의식)*	*30분*	

교육실시자 (자체교육)	성명	직위	교육장소

■ 수강자 명단

순번	소 속	성 명	서 명	순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 교육사진

Ⅲ Q&A | chapter별 Q&A

| 질의목록 |

1-1.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1-2. 각급 학교는 업종이 무엇인가요?
2-1. 현업업무종사자란?
3-1. 휴업일에 휴무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3-2.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을 합의한 경우는?
3-3. 업무담당자가 경미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3-4. 질병의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제출하면 되는지?
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 학교 별로 설치해야 하는지?
4-2. 회의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심의안건은 현업업무종사자만 대상인가요?
5-1.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는?
5-2.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법령의 요지를 반드시 게시해야 하나요?
6-1.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6-2.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6-3.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6-4. 학교 공사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7-1. MSDS는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7-2. 경고표시는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 부착해야 하나요?
12-1. 안전모의 사용연한이 있나요?
12-2. 사다리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13-1. 보건증(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건강진단)으로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할 수 있나요?
13-2. 근로자 건강센터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질의 내용 |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1-1.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경기도교육청 산하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경기도교육감임.
※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주는 학교법인 이사장임.

1-2. 각급 학교는 업종이 무엇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교육 서비스업종"임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1. 현업업무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1.16.) 및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제정(2020.1.15.)에 따라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 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고시 별표1, 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현업업무종사자라 함. 현업업무종사자는 업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해당 업무 내용을 수행한다면 공무원도 대상이 됨.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총 29개 직종에 대해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

제3장 산업재해 대응체계

3-1. 휴업일에 휴무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휴업일수에 휴무일 및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휴업일이 금요일~월요일인 경우 4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됨

3-2.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을 합의한 경우는?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해야 함.
이 밖에 업무담당자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이거나, 재해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함.

3-3. 업무담당자가 경미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3일 이상의 휴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3-4. 질병의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제출하면 되는지?

'사고'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등 질병의 경우는 산업재해 발생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재해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에 대해 승인(인정)이 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제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 학교별로 설치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100명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가 있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단일 사업장)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경기도교육청(본청)에 있음.

※ 사립학교는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의무가 있음

4-2. 회의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위원장이 심의·의결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마치고 회의 결과 등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음

4-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 25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 20만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4-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심의안건은 현업업무종사자만 대상인가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 제24조가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제5장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5-1.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는?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대상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이며 적용범위는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감 소속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29개 직종임.

※ 사립학교는 사업주가 이사장이므로 자체 사업장에 맞는 규정을 제정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현업업무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때에만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있음.

5-2.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법령의 요지를 반드시 게시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법령의 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법령의 요지를 게시하지 않게 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제6장 안전보건교육

6-1.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 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6-2.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예: 미화 → 급식)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승진, 인사 이동으로 관리감독자가 최초로 지정된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 기계설비나 작업장소 및 생산제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실시 의무는 없음.

6-3.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1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일(日)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됨.

6-4. 학교 공사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방학, 공사 등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되므로 소급하여 이수하지 않아도 됨. 휴직, 휴가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교육 수강 의무가 없음.

제7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7-1. MSDS는 어디에 게시해야 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보기 쉬운 장소 또는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예시)
- 시설관리: 시설관리실, 화학물질보관장소 등에 게시

7-2. 경고표시는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 부착해야 하나요?

제조사가 용기나 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여 제공하고 사업장에서는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덜어서 사용하는 경우나 경고표시가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착하면 됨

기타 사항

12-1. 안전모의 사용연한이 있나요?

안전모의 사용연한은 없으나 제조사의 사용기준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함

12-3. 사다리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 1.2m 이상~3.5m 이하는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함

13-1. 보건증(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건강진단)으로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할 수 있나요?

일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건강진단(보건증)에는 해당 검진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갈음할 수 없음.

13-2. 근로자 건강센터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건강센터는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므로 개인적으로 센터 방문하여 건강상담 등 서비스 이용 가능.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역 5개 근로자건강센터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청 근로자에 건강증진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시집(2013.1.1.~2021.12.31.)을 경기도교육청 통합자료실(과 자료실) 학교안전과 122번(2023.4.24. 등록)에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만든 사람들

총괄/기획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배영환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담당 사무관 김진영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담당 교육행정6급 김영선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담당 노무사 신민아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담당 안전관리자 김승일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담당 안전관리자 허민진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담당 보건관리자 이기쁨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담당 보건관리자 김지현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담당 교육행정8급 장유진

제목디자인 | 함박초등학교 교사 홍진희

발행일 | 2024년 4월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